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6. 24.)

1. 정보 : 우리 대학교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2. 공개 :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우리 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정보의 주요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대상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1. 법률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정보
2. 학교 운영상 비밀에 속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학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상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3.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4.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5조(정보공개절차) ① 청구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대상정보의 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총무처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주무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장은 관계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 11. 8, 2012. 8. 1.)

제6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지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한다.

제7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②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지한다.

제8조(정보공개제한)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